



보도시점 2025. 12. 24.(수) 12:00 배포 2025. 12. 24.(수)

##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 피해구제체계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 운영
- 범부처 협업, 생애 전주기 지원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앞당겨

정부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0년 9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인정 질환 중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이 2014년부터 0.8%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 9월 이후 21.9%까지 확대되었다. 구제급여 지급 항목도 2014년 4종에서 2020년 8종으로 순차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하는 등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해왔다.

2024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지만 그간의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참사의 공동책임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미흡했고 국가책임 인정 이후에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신속히 전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교육, 국방, 질병 등 다양한 요구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에는 단일부처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15년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현행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국가책임 강화 및 배상체계 전환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추후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추모일을 지정하여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출연 이후 중단되었던 정부 출연을 2026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기간 동안은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 < 2. 범부처 협업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 >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TF)를 구성하여 각 부처 소관의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기존 추천 방식 대신 주거지 인접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을 통해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며, 특히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서 질환으로 인해 가정에서 요양 또는 정신건강 진단(모니터링) 참석까지 확대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은 건강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판정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요원의 경우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는 제외하고,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소총, 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주특기는 제외한다.

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는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 대납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정산받는 불편을 해소한다. 아울러 일터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도 보장된다.

평생 중증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성장과정 중 건강상태를 분석해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를 호흡기계 중심에서 만성 및 전신질환과 그 후유증까지 확대한다.

### < 3. 전문성·소통 강화로 피해자 신뢰 회복 >

그동안 지적된 전문성 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도 개편된다.

기존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시켜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의 발굴에서 지원까지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한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 충원을 검토한다.

피해자 간 소통과 건강정보 제공 등을 위해 마련한 소통공간(서울)을 활성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소통팀 운영 및 온라인 간담회 등으로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의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손삼기 (044-201-6810)
<총괄>	환경피해구제과	담당자	사무관	최재석 (044-201-6744)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호기 (044-200-2341)
	안전환경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윤남웅 (044-200-2352)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박환조 (044-215-7260)
	기후환경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박형민 (044-215-7262)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마소정 (044-203-6682)
	학교교수학습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안중선 (044-203-6688)
담당 부서	법무부	책임자	과 장	국 진 (02-2110-3202)
	국가소송과	담당자	사무관	이선민 (02-2110-3211)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우호석 (02-748-6640)
	보건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윤지수 (02-748-6642)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장재원 (044-202-2510)
	질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봉길 (044-202-2517)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44-202-7451)
	청년취업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보 (044-202-7435)
담당 부서	병무청	책임자	과 장	정재숙 (042-481-2913)
	병역판정검사과	담당자	서기관	서혜연 (042-481-2918)

**I . 주요 경과**

- '06년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 '08년·'11년 원인조사 → '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으로 규명(복지부)
  - \* '94년 CMIT/MIT 함유 제품, '00년 PHMG/PGH 함유 제품 출시
  - '11.12월, 관계부처 합동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 '12.11월, 생활화학제품 관리 이관(산업부 → 기후부)
- '14.7월, 기후부 피해구제(의료비·장례비) 개시(「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 '17.8월, 사회적 합의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
  - '22년, 피해자-기업 간 사적 조정 추진, 이견\*으로 무산
    - \* 합의 뒷받침할 제도 부재, 합의금 총액(최대 약 9천억원)에 대한 기업별 분담액 이견 등
- '24.6월, 대법원 판결로 PHMG/PGH 함유 살균제 피해의 국가책임 인정

**[ 국가책임 인정 판결(大法) ]**

- (개요) PHMG/PGH 피해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국가책임 인정\*('24.2.6), 대법원 확정('24.6.27)
  - \* 원고 5인 중 3인은 3백~5백만원 배상, 2인은 既 지급받은 구제급여조정금을 고려 위자료 미지급
- (판결요지) PHMG/PGH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준수했을지라도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 과실 인정
  - \* 화학물질은 용도 등에 따라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기후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특정용도(카펫항균용첨가제)에 기반하여 심사하였으나 결과 공표 시 특정용도는 언급하지 않고 '유독물 해당 없음'으로만 고시 등

- '24.6월~, 정부 주도 피해자 소통\* 강화 및 개선방안 모색
  - \* 피해자단체 면담('24.6~11, 13회), 전국 간담회('25.3~4, 10회), 개별 의견조사('25.4~6) 등
  - '25.上, 정부 참여 피해자-기업 간 합의 추진
  - '25.8월, 피해자-기후부장관 간담회, 9월 경청수석 간담회
- '25.9월~, 범부처 TF 구성·운영

## II. 그간의 대응 및 한계

### < 대응 >

#### □ 공정·신속한 피해구제 실시

- (피해 인정) 구제 신청 8,035명 중 5,942명 피해인정('11~'25.11)
- (판정체계) '20.9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 (개선)연계된 관련 질환 (후유증 포함)을 인정하는 개별판정 체계로 개편
  - ※ 인정질환 중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 : ('14~'20.8) 0.8% → ('20.9~'25.11) 21.9%

#### □ 피해구제 강화 및 재원조달 확대(특별법 개정, '19.2·'20.9월)

- (구제급여) 지급항목 순차 확대('14년 4종 → '20년 8종\*) 및 지급액 상향(요양생활수당 1.2배, 특별유족조위금 2.5배)
  -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애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 (재원 확충) 기업 2,500억원 분담('17·'23, 2회), 정부 225억원 출연('19~'21)
  - ※ ('25.11) 약 1,934억 원 지출, 현재 약 904억 원 잔액

#### □ 생애주기별 피해자 지원

- (건강·생활) 건강 모니터링\*, 예방접종, 밀착 건강상담 등 일반 서비스 제공, 학생·군인 맞춤형 지원
  - \* △(신체, '18~) 혈액검사, 소변검사, 폐기능검사 등, △(정신, '20~) 심리 검사·상담 등
- (법률·연구) 법률상담 등 지원('21~), 질환별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발간



## < 한 계 >

### □ 참사의 공동책임자로서 국가 역할 미흡

- (참사 규정)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정 이유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도 참사로 기재\*(17.12)
  - \* (제정이유) 두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이하 중략) 재발을 방지하도록~
  - 다만, 최종 법률의 정의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규정
- (그간 역할) 정부는 기업책임 전제 下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집중
  - 피해자·기업 직접 문제해결(22 사적조정)→법적근거 부재·분담금 이견, 무산
  - \* 정부는 합의위원회 위원장 추천
- (법체계) 국가책임 인정(24.6) 이후 「세월호피해지원법」과 같이 국가배상체제로 전환해야 했으나, 기존 피해구제 체계 유지

### □ 단일 부처로는 문제해결에 역부족

- (단독대응) 피해자들의 교육·국방·질병 등 다양한 개선요구를 기후부 단독으로 대응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도출 미흡
  - ※ (전담경과) 관계부처 합동 피해자 지원계획(13.8), 「환경보건법」 시행령으로 피해구제

### □ 피해자들의 구제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

- (불신·불만) 15년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국가에 불신, 現 피해구제제도에 불만 누적
  - ※ 기후부장관 간담회(8.6), 경청수석 간담회(9.3)를 통해 다양한 개선 건의사항 취합

#### 【 피해자 설문조사(9.26~10.17, 1,213명 응답) 주요 내용 】

- ① 정부 차원 참사 공표 필요 97.4%
- ② 정부책임을 법률에 구체화 필요 97.1%
- ③ 질병결석 인정 제도 도움 안됨 44.8%
- ④ 군입대 신체검사 시 의료기록 반영 안됨 78.8%
- ⑤ 피해자 중심 소통 노력 미흡 61.0%

### Ⅲ. 중점 추진방안

- ◇ 피해해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배상체계로 전환**
- ◇ **범부처 협업** 및 **전주기 지원**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문제해결

#### ① 국가책임 강화 및 배상체계 전환

-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사회적 참사임을 명확화**
  - 가습기살균제 사건 → **참사 규정**(특별법 정의)
  - **추모사업**을 「환경피해관리센터」(기후부 산하) 주도(국가예산) 추진
    - 특별법 목적에 '추모' 추가, 추모일 지정 및 공식 추모행사 개최
- **국가 역할 강화**
  - **손해배상책임**을 「기업」 → 「기업과 국가」로 확대
    - ※ 사업자 대상 구상금청구 소송(정부 既지급 구제급여 등) 취하 검토
  - 기후부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 폐지 →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
  - '19~'21년 이후 중단된 **정부 출연** 재개('26. 100억원), 개별 피해자별 배상금 총액 추계 후 출연금 결정
- **문제해결 체계 전환**
  -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 →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환
    - \* 영양급여, 영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지급 \*\* 적극적(치료)·소극적(일시이익) 손해 위자료 지급
  - 건강피해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배상금 수령방법의 선택권도 부여 (일시금 수령 또는 일부 수령+계속 치료비)

## □ 안정적 재원 확보

○ 분담금 총액의 사업자간 및 사업자-원료공급자 분담비율\* 재검토

\* 現 원료공급자:제조·판매자 = 20:80 → 원료 공급자 부담률 상향

※ 연구용역(환경연구원·법제연구원)에서 도출한 배상총액 추계 기초자료 및 부담률 반영

○ 정부 책임을 배상 소요재원의 부담률에 반영하고, 지배회사도 분담금 납부대상에 제한적(보유지분 한도)으로 추가

○ 기업의 분담금 완납을 유도하되, 미납 시 우선징수권 및 공표제도 마련, 사업장 국외 이전 신고제도 도입(미 이행시 과태료)

- 기업 합병·분할, 양도·양수 등 경영여건 변화 시 분담금 확보를 위한 납부의무 승계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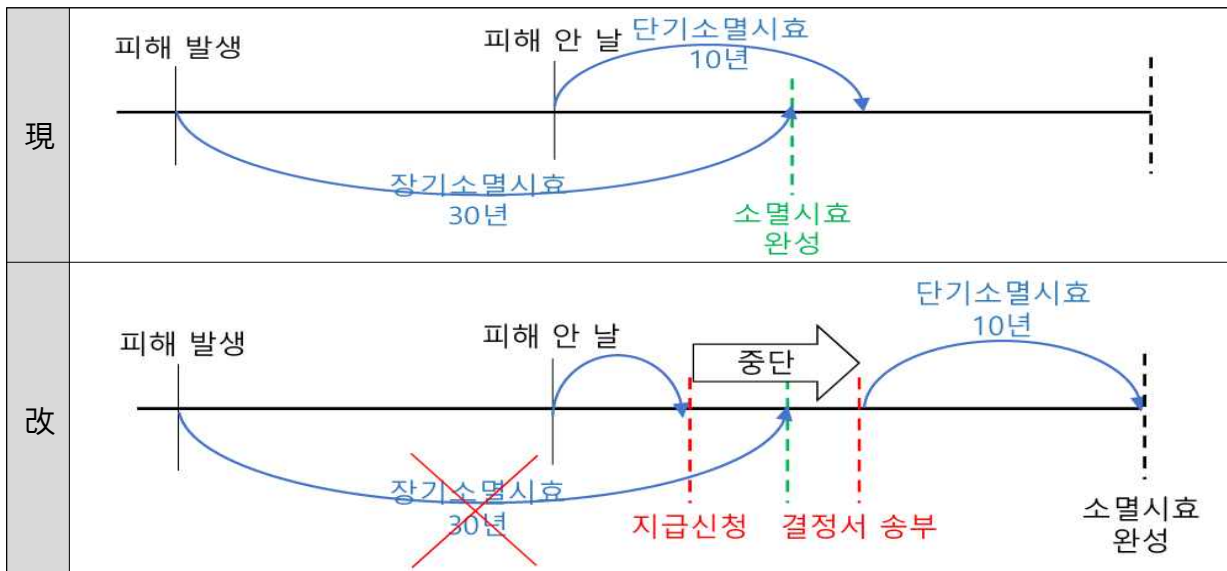
※ 일부 제조·판매 기업의 매각·기업회생절차 등 불확실성 고려, 안전장치 마련

##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보장 강화

○ 손해배상청구권 장기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단기소멸시효 중단사유\*\* 추가(미완성 소멸시효 한정) → 청구권을 충분히 보장

\* 단기소멸시효 폐지는 유사입법례, 법적 안정성 관련 대법원 판례 고려 시 곤란

\*\* 피해자들은 특별법 전부 개정·시행 시 배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부칙)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기간 동안은 소멸시효 진행 중단 후 새로 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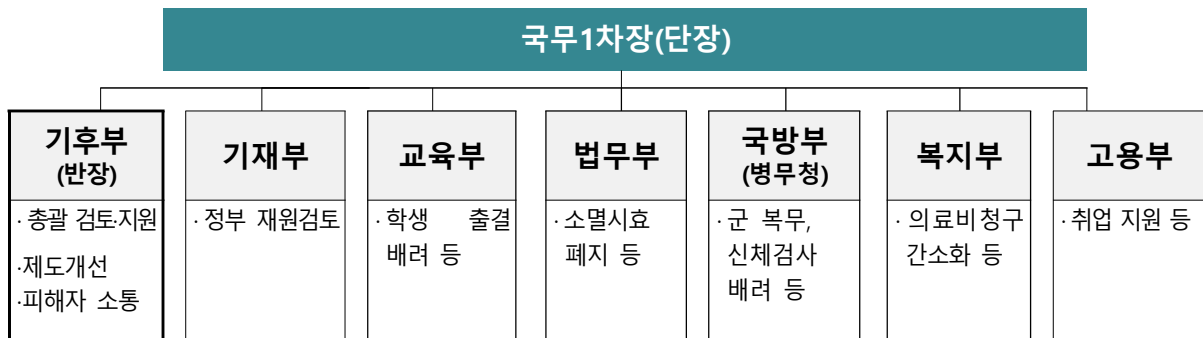


## ② 범부처 협업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

### □ 범부처 TF 구성·운영

- 국조실 총괄(단장 국무1차장), 관계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운영
- 부처 소관 개선과제 종합 검토, 특별법 개정안 등 논의(9.24, 10.22, 12.4)

<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범부처 TF >



### □ (학업기) 청소년 피해자들의 교육권 및 치료여건 보장

※ (25. 현황) 초중고 학생('07~'17年生) 914명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을 통해 질병결석 인정사유 명확화
  - 질병결석 인정사유를 질환으로 인해 가정에서 요양 또는 정신건강 모니터링(마음건강프로그램) 참석까지 확대
  - 학기 초에 최초 제출한 의사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의 질병결석 증빙서류 대체 지속 시행
- 중·고등학교 진학 시 추천 → 주거지 인접학교 희망 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배정
- 학생피해자 대학교 수업료 등 등록금을 일부 지원(국가장학금 예산 활용)

## □ (병역) 安心 국방의무 이행을 위한 피해자 배려

※ (병역판정 대상) '29년까지 약 632명('06~'15年生)

### ○ 既 운영 중인 피해자 배려 제도\* 이행여부 수시 점검

\* △(신검) 피해자 대상 별도 평가항목, 판정 시 내과 전담의 검토 및 결과 설명  
△(복무) 군의관 등 주기적 상담·조치 및 국군의무사령부 명단 관리('25. 35명)

### ○ 현역 입대 피해자\*에게 주특기 부여 시 소총·박격포 등 신체활동 多 필요 특기 제외(국방부 지침 개정)

\*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 (유사사례) 천식, 기흉 등 보유자는 소총·박격포·장갑차 조종·정비 등 42개 특기 제외

### ○ 사회복지요원 복무 시 유사사례\*와 같이 재난·안전관리 지원 분야 등은 배치 제한(병무청 훈령 개정)

\* 기관지 천식 질환 4급자 판정자는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제한

## □ (사회진출) 피해청년의 든든한 취업 지원

※ (20~30대 피해자) 1,085명('86~'05年生)

### ○ 피해 청년 등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우선 참여 보장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 ○ 정보제공 동의자 대상 개인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안내(이메일, 문자 등)

## □ (일상회복) 치료 기회 및 진료 편의성 제고

### ○ 건강피해로 인한 치료 필요시 근무 중 휴가 담보

### ○ 진료 후 치료비 선납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비용처리를 위한 체계 개선

※ (現) 피해자 납부, 기술원 심사 후 지급 → (改) 건보공단 대납(급여항목), 기술원 정산

## □ (전생애 건강관리) 피해 조사·발굴 등 추적관리 및 치료연계

- 건강모니터링 DB 구축(성장과정 건강상태 분석), 질환별 경과 및 예후 평가로 조기 치료 지원
  - 영·유아기 노출 피해자의 폐기능 및 이상소견 등 추적관찰 강화로 전생애 관리방안 마련(임상·역학·건강모니터링 센터)
- 신체-정신 건강모니터링\* 상호 연계\*\*를 통해 심리·사회적 고위험군 밀착 상담 및 치료
  - \* △(신체) 국립중앙의료원 등 11개 병원 △(정신) 연세대 및 협약상담소 141개
  - \*\* 사전설문조사(삶의 질) 검토 → 맞춤형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및 치료
-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를 호흡기계 급성질환 중심 → 만성·전신 질환, 동반 질환 및 후유증으로 확대\*
  - \* (대상) 성장·발달 영향, 뇌종양 등 전신암, 심혈관계 질환 등 후유증 검토

## ③ 전문성·소통 강화로 피해자 신뢰 회복

### □ 피해지원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성 제고

- 피해구제(가습기살균제, 석면, 환경오염 등) 및 환경피해 발굴(대상 발굴, 모니터링) 등 업무 전담본부(조직) 개편·신설
  - 「환경보건처」 →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 목적 명확화
  - 기존 환경보건처를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 2개처로 확대 개편
  - (現) 가습기살균제 + (加) 환경오염, 석면 등 환경피해를 포함하여 “실” → “처” 단위로 격상
- 상담사·간호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 충원

## □ 피해자 상시 소통강화

- 피해자 간 소통, 건강 정보제공 등을 위한 소통공간 운영
  - ※ 공개 강좌, 현장상담, 간담회 등으로 소통공간 활성화
- 기후부 소통팀 신설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통전담자 운영
- 피해자 관심 주제별 등 수시 간담회(온·오프라인)

## IV. 향후 계획

### □ 국회협력,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26.上)

※ 참사규정, 국가 책임 강화, 배상체계 전환, 피해자 특례 지원, 자원 안정성 확보 등

###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원단 운영 등 배상체계 전환 사전 준비('26.上)

- 전문위원회 사전 운영을 통해 피해자 개인별 배상심의 준비 착수

### □ 범부처 지원단에서 소관별 개선과제 이행점검('26.~)

# 덧붙임 1

## 달라지는 점

구분	As-Is	To-Be
【정부】	◆ 피해자 신속구제	◆ 참사의 공동책임자 ◆ 문제해결 주체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책임만 전제</li> <li>· (新)</li> <li>· 피해구제 체계</li> <li>· 구제급여 선택권 不可</li> <li>· 기후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li> <li>· (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책임 범위 명확화 (추모, 예산 등)</li> <li>· 참사를 정의에 신설</li> <li>· 배상 체계로 전환</li> <li>· 일시금 지급 또는 일부지급 + 계속치료비 중 선택</li> <li>·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li> <li>· 지원단 및 전문위원회 설치</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치료비 先 납부, 後 정산(기술원)</li> <li>· (新)</li> <li>· (新)</li> <li>· (新)</li> <li>· (新)</li> <li>· 추모 지원실적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비 납부 간소화 (건보공단 대납(급여항목) + 기술원 정산)</li> <li>· 대학 교육비 지원</li> <li>· 인접 중고교 우선 배정</li> <li>· 치료휴가 보장</li> <li>· 취업지원 대상 확대, 우선권 부여</li> <li>· 환경피해관리센터(기후부 산하) 주도 공식 추모식 및 추모사업</li> </ul>

주요 과제	추진 일정	조치 사항
<b>① 국가책임 강화 및 배상체계 전환</b>		
① 가습기살균제 참사 명확화	'26.1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
② 추모사업 추진	'27년~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협의
③ 손해배상 책임 확대	'26.1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
④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	'26.1월~ 법 통과 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 심의위원회·지원단 사전 구성
⑤ 출연금 재개	'25.12월 '26.下~	'26년 예산 확정 심의위원회 운영
⑥ 배상체계 전환 및 수령선택권 보장	'26.1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
⑦ 분담금 납부비율 재검토	'26.1월~	특별법 법률 및 시행령 개정
⑧ 분담금 납부대상 추가, 승계, 공표 등	'26.1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
⑨ 손해배상청구권 강화	'26.1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
<b>② 범부처 협업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b>		
① 범부처 TF 구성·운영	'25.9월~	국조실 주관 구성, 운영
② 피해자 인접학교 우선 배정	'26.1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
③ 대학교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	'26.1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
④ 질병결석 인정사유 명확화	'25.10월 '26.1월	시·도교육청 협조요청 공문 시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⑤ 사회복지무요원 배치 제한	'26.1월	사회복지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개정
⑥ 현역 입대자 주특기 배려	'25.12월~	운동장애자 코드(B2) 반영
⑦ 현 운영중인 제도 이행여부 점검	수시	신체검사, 복무 시 상담 등
⑧ 피해청년 취업지원	'26.上 '26.1월~ '26.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시 개정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개별안내, 참여보장 청년도전지원사업 상담, 참여 허용
⑨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25.12월~	이메일, 문자 등
⑩ 치료휴가 보장	'26.1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
⑪ 치료비 청구·지급 편의성 제고	'26.1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
⑫ 건강모니터링 DB 구축, 치료지원	'25.11월~	사업 추진
⑬ 신체-정신건강모니터링 연계	'26.1월~	사업 추진
⑭ 인과관계 연구 확대	'26년~	연도별 검토 계획 수립
<b>③ 전문성·소통 강화로 피해자 신뢰 회복</b>		
① 환경산업기술원 조직 개편, 충원	'26.1월~	특별법 개정 연계 추진
② 소통강화	'25.9월~	소통공간 운영 활성화, 수시간담회